

##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2011. 1. 10.	조례 제2299호	
일부개정	2011. 7. 6.	조례 제2330호(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	2020. 3. 2.	조례 제3170호(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일부개정	2023. 5. 22.	조례 제3502호(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일부개정	2023. 5. 22.	조례 제3505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 설치된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3. 2.>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3. 2., 2023. 5. 22.>

1. “아동”이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3조제1호의 아동을 말한다.
2. “지역아동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라 함은 「아동복지법」 제52조제1항 제8호에서 정한 지역사회 아동의 보호·교육·건강한 놀이와 오락의 제공, 보호자와 지역사회의 연계 등 아동의 건전육성을 위하여 종합적인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을 말한다.
3.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라 함은 지역아동센터에서 아동의 상담지도, 교육, 양육, 치료, 기타 아동의 복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4. “보호자”라 함은 친권자, 후견인, 아동을 보호·양육·교육하거나 그 의무가 있는 자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아동을 보호·감독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책임) ① 시장은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보호하고 육성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

② 시장은 센터의 환경개선과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기존의 복지시설, 종교시설 및 기타 공공시설을 개·보수하거나 일부를 이용하여 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센터를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실행 주체) 사회복지법인, 종교법인 등 비영리법인, 등록된 비영리 민

간단체 및 개인 등 법령이 정한 아동의 보호 및 교육사업 등 보육을 행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춘 자는 신고에 의하여 지역아동센터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

제5조(이용대상) 센터를 이용할 수 있는 대상은 제2조제1호의 아동 중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아동으로 한다.

1. 부모의 취업 및 경제적 사정으로 방과 후에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동
2. 지역 내 빈곤·학대·방임 가정의 아동
3. 한부모·조손·소년소녀가정·다문화가정의 아동
4. 아동 자신의 장애로 방과 후에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
5. 그 밖에 센터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아동

[전문개정 2023. 5. 22.]

제6조(주요사업) 센터에서 수행하는 주요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아동의 학습능력 향상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한 교육사업
2. 아동 및 가족을 위한 복지사업
3. 아동의 일상생활지도와 학교생활유지 및 적응력강화사업
4. 아동의 정서함양을 위한 문화활동 지원사업
5. 아동의 통합적인 서비스를 위한 지역연계사업
6. 아동과 학부모와의 상담 및 가정조력 프로그램운영
7. 지역아동센터간 협력과 교류사업
8. 다문화가정 아동의 교육·문화·정서 등 격차해소를 위한 사업
9. 아동의 건강 증진 및 영양에 관한 사업
10. 그 밖에 시장이 아동복지 향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사업비 지원) 시장은 센터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센터 시설운영 및 프로그램 운영비
2. 센터 이용 아동 급식비
3. 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복리 후생비
4. 센터 종사자 교육경비
5. 그 밖에 센터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용

제8조 삭제 <2011. 7. 6.>

제9조 삭제 <2011. 7. 6.>

제10조 삭제 <2011. 7. 6.>

제11조 삭제 <2011. 7. 6.>

제12조 삭제 <2011. 7. 6.>

제13조 삭제 <2011. 7. 6.>

제14조(지도감독) ① 시장은 미신고센터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법적 요건을 갖추도록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센터에 대하여 설비 및 설비기준, 안전사고 예방, 종사자 관리, 재정, 급식청결상태 등을 수시로 지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센터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도 점검 시 지적된 사항에 대하여 즉시 시정 조치하여야 하며, 이행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설치되어 운영하는 센터는 이 조례에 의한 것으로 본다.

부칙 <2011. 7. 6. 조례 제2330호, 안양시 사회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조례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부칙 <2020. 3. 2. 조례 제3170호, 안양시 조례 중 제명 띄어쓰기와 약칭 및 어려운 한자어 일괄정비 조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2호, 만 나이 통일을 위한 안양시 조례 일괄개정조례>

이 조례는 2023년 6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안양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부칙 <2023. 5. 22. 조례 제3505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